

제1장 목 적

이 지침서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전력기준” 또는 “KEPIC”이라 한다)에 의거 대한전기협회(관련 위원회 조직과 KEPIC 전담기구를 포함하여 지칭하며, 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공인검사기관 자격의 심사와 인증에 관한 제반 지침을 기술한다.

제2장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다음 분야의 공인검사기관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 2.1 원자력기계(KEPIC-MN) 분야
- 2.2 원자력구조(KEPIC-SNB) 분야
- 2.3 원전가동중검사(KEPIC-MI) 분야
- 2.4 일반기계(KEPIC-MGB, MGE, MBB) 분야

제3장 참고자료

- 3.1 KEPIC 머리말(Foreword)
- 3.2 KEPIC-QAI “공인검사”
- 3.3 KEPIC-MNA “원자력기계 일반요건”
- 3.4 KEPIC-SNA “원자력구조 일반요건”
- 3.5 KEPIC-MIA “원전가동중검사 일반요건”
- 3.6 KEPIC-MGA “일반기계 일반요건”
- 3.7 KEPIC-MBB “보일러”
- 3.8 운영지침서 KEPIC-11-11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인증”(이하 “KEPIC-11-11”이라 한다)
- 3.9 운영지침서 KEPIC-11-22 “공인검사감독원·공인검사원 자격인정”(이하 “KEPIC-11-22”라 한다)
- 3.10 KEPIC위원회 규정

제4장 일반사항

- 4.1 운영지침서 KEPIC-11-11 제4장 각 절의 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인증(신청)업체는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신청)기관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4.2 협회는 공인검사기관의 자격인증 유효기간동안 언제든지 공인검사 활동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를 통해 발견된 불만족사항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4.3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서는 다른 조직에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5장 용어의 정의

5.1 공인검사기관

KEPIC-QAI의 용어 정의를 따른다.

5.2 공인검사감독원/공인검사원

KEPIC-QAI의 용어 정의를 따른다.

5.3 심 사

공인검사기관(또는 자격인증 신청기관)이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하여 인증 신청분야에 적합한 공인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의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점검·조사·평가·심의하는 행위

5.4 인 증

심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KEPIC과 이 지침서의 요건에 적합한 공인검사기관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5.5 자격인증서

일정기간동안 특정한 범위에 대한 공인검사기관 자격을 인증하여 협회에서 발행하는 문서

제6장 책임사항

6.1 기술기술품질전문위원회

- 6.1.1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 관련 운영지침서 심의·승인
- 6.1.2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과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 6.1.3 공인검사기관에 대한 감사시행 결정과 자격인증 취소 승인
- 6.1.4 이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방법 결정

6.2 원자력제도분과위원회

- 6.2.1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 관련 운영지침서 초안작성(실무연구팀) 및 검토
- 6.2.2 필요시 이 지침서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수립 및 기술품질전문위원회에 보고
- 6.2.3 기타 기술품질전문위원회로부터 위임되는 사항의 처리

6.3 KEPIC 전담기구(협회 KEPIC처, 이하 “전담기구”라 한다)

- 6.3.1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 관련 행정관리 및 지원
- 6.3.2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 관련 대내외 창구 및 조정기능 담당
- 6.3.3 이 지침서에서 위임하는 업무에 대한 내부지침의 수립 및 운영
- 6.3.3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 관련 제반 업무수행 기록의 유지 및 관리

6.4 심사반장

- 6.4.1 공인검사기관 자격심사 총괄 및 심사반 의견 조정
- 6.4.2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격인증 추천여부 최종 결정

6.5 심사자

- 6.5.1 지정된 분야에 대한 심사 수행
- 6.5.2 불만족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과 내용의 적절성 확인 및 평가

제7장 인증신청 자격

- 7.1 공인검사 대상 분야의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제조사·재료업체·설치자·시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의하여 경영이 직·간접적으로 지배되는 조직은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7.2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KEPIC-QAI와 신청분야에 해당하는 KEPIC 각 분야 일반요건에 적합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 7.3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 분야별로 KEPIC-11-22에 따라 자격인정되어 유효한 자격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4명 이상의 공인검사감독원 또는 공인검사원(원자력구조 분야는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 중 1명 이상은 해당 분야의 공인검사감독원이어야 한다.
- 7.4 최초로 자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7.3의 공인검사감독원과 공인검사원 자격인정서를 협회의 자격시험 합격통지서가 첨부된 해당 자격에 대한 자격등록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KEPIC-11-22에 의거 자격인정서를 취득하지 못하여 7.3에서 정한 인원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서에 따른 심사 결과 자격인증 추천되었더라도 자격인증을 보류한다.
- 7.5 동일한 공인검사감독원 또는 공인검사원이 2개 분야 이상에 대해 자격인정(신청)된 경우 7.3에 의한 유자격 인원은 해당 분야별로 각각 포함한다.

제8장 심사반 구성 및 선정

- 8.1 심사반은 KEPIC-11-11에 따라 자격인정된 선임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심사반장은 선임심사위원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8.2 심사반은 전담기구에서 선정하며, 심사인원과 심사기간은 전담기구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8.3 필요시 심사반장의 요청에 따라 8.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 신청분야의 기술기준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토록 하여 심사반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인증신청 및 신청서류 검토

9.1 인증신청

9.1.1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담기구에 인증심사를 신청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및 연락 담당자
3. 자격인증 신청분야
4. 공인검사감독원·공인검사원 고용 현황(자격인정 신청인원 포함)
5. 공인검사프로그램(품질보증계획 포함) 관련 정보 : 부록 [별표1]의 관련조항 기재
6. KEPIC 보유현황
7. KEPIC 또는 참조 기술기준 관련 주요 검사업무 수행실적
8. 기타 심사에 유용한 정보

9.1.2 최초로 자격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KEPIC-11-22에 따라 인증 신청분야에 해당하는 공인검사감독원과 공인검사원의 자격인정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9.1.3 전담기구에서는 인증심사 신청서류에 9.1.1의 모든 사항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정된 심사반에 배포한다.

9.2 신청서류 검토

9.2.1 인증심사 신청서류는 현장심사 실시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사반장의 책임하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 분야에 적합한 공인검사감독원·공인검사원 고용(또는 자격신청) 여부
2. 공인검사 수행 조직 체계
3.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세부 내용의 KEPIC 해당 요건 만족 여부

9.2.2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한 인증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반의 사전 검토결과 의견이 있는 사항은 프로그램 이행 확인 전에 인증 신청기관에 제시하여 현장심사가 종료되기 전 까지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9.2.1의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의견은 현장 심

사기간 중에 인증 신청기관의 조직과 공인검사 프로그램 운영 특성을 확인한 후 제시하여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장 현장심사

10.1 심사계획 통지

10.1.1 심사반장은 현장심사 개시 7일전까지 인증 신청기관과 각 심사자에게 심사계획을 문서로 작성하여 통지한다.

10.1.2 심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사기간
2. 심사분야
3. 심사반 구성 및 심사자별 심사분야
4. 심사전 회의 일시를 포함한 세부 심사일정과 심사 준비사항 등

10.2 심사전 회의

10.2.1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심사반장의 주재하에 심사전 회의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 등을 협의·확인한다.

1. 심사반 및 인증 신청기관의 참석자 소개
2. 적용 KEPIC 및 인증 신청분야 확인
3. 세부 심사일정
4. 분야별 수감담당자 지정
5. 불만족사항 발생시 조치 및 확인방법
6. 심사수행을 위한 시설 출입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심사기간 조정 필요시 조치방법
8. 심사후 회의 일시·장소 및 참석범위 결정

10.2.2 심사전 회의시 인증 신청기관에서는 공인검사 업무 책임자와 인증 신청분야별로 1명 이상의 공인검사감독원(또는 자격인정 신청자)이 참석하여야 한다.

10.3 현장심사 수행

10.3.1 심사반장은 사전에 제시된 인증심사 신청서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10.3.2 각 심사자는 정해진 심사일정에 의거 KEPIC과 부록의 별표1에 따라 지정 분야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10.4 심사후 회의

10.4.1 현장심사가 종료되면 심사반장의 주재하에 심사반과 인증 신청기관의 책임자가 참석하여 심사후 회의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 등을 설명·확인한다.

1. 적용 KEPIC 및 인증 신청분야 재확인
2. 심사총평 및 인증 추천여부 설명
3. 심사결과 후속처리 절차
4. 확인 또는 지득한 심사대상 조직의 고유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확인
5. 이의사항에 대한 인증 신청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6. 사후 공인검사 관련 프로그램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0.4.2 인증 신청분야는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0.5 다른 지침서의 준용

10.5.1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에 따른 현장심사와 관련하여 이 지침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서 KEPIC-11-11 제13장의 13.1 내지 13.5의 지침을 준용한다.

10.5.2 상기 10.5.1의 준용에 있어 “인증신청업체”는 “인증신청기관”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11장 불만족사항의 구분 및 처리

11.1 심사과정 중 확인된 불만족사항은 KEPIC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도나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1.1 중대한 지적사항

1. 공인검사 업무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와해되어 있는 경우
2. 명백한 KEPIC 요건 위배사항으로서 현장심사 기간 중에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자격인증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공인검사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 능력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

11.1.2 경미한 지적사항

1.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한 공인검사 프로그램상의 부분적인 결함 요소
2. 공인검사 프로그램 이행상의 단순한 품질 위배사항
3. 관리상의 착오 또는 실수

11.2 불만족사항의 구분은 심사반 전원 합의로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심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심사반장이 결정한다.

11.3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심사반장은 현장심사의 중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 신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심사가 수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심사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4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심사기간중에 인증 신청기관의 시스템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12장 심사결과 보고 및 자격인증 승인

12.1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12.1.1 현장심사가 종료되면 심사반장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달기구에 제출한다.

12.1.2 현장심사 결과 공인검사 관련 KEPIC이나 자격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반장은 별도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달기구에 제출한다.

12.2 인증 추천 및 승인

12.2.1 인증 신청기관의 공인검사 관련 프로그램이 인증 신청분야(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포함)에 적합하게 수립·이행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현장심사 기간중에 만족스럽게 시정조치된 경우 자격인증을 추천한다.

12.2.2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되었거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심사 기간중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 추천을 보류한다.

12.2.3 기술품질전문위원회에서는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을 심의·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인증의 조건을 제시하여 공인검사기관의 자격인증을 승인할 수 있다.

12.3 다른 지침서의 준용

12.3.1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에 따른 현장심사와 관련하여 이 지침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서 KEPIC-11-11 제15장 각 절의 지침을 준용한다.

12.3.2 상기 12.3.1의 준용에 있어 “인증 신청/추천업체”는 “인증 신청/추천기관”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13장 자격인증서 발행과 관리

13.1 자격인증서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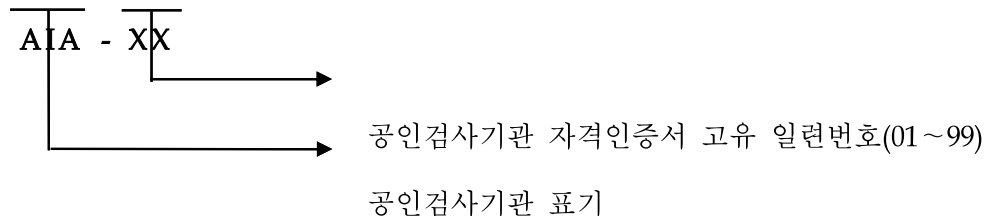
13.1.1 기술품질전문위원회에서 자격인증이 승인된 기관에 대해 전담기구에서는 협회장 직인을 날인하여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서를 발행한다.

단,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기관 승인 통보 접수후에 발행한다.

13.1.2 자격인증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자격인증서 번호
2. 인증기관명
3. 주소
4. 인증일자 및 종료일자
5. 인증분야(필요시 인증의 조건 또는 제한사항 포함)

13.1.3 자격인증서 번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여한다.



13.2 공인검사기관의 대 협회 통지의무

13.2.1 공인검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인검사의 수행 개시·변경 또는 종료시
2. 소속 공인검사감독원 또는 공인검사원의 고용관계 종료시
3. 공인검사 프로그램의 변경시
4. 이 지침서 제14장에 따른 인증서 변경사유 발생시

13.2.2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사항이 공인검사기관 자격의 상실 사유가 되는 경우

전담기구에서는 그 내용과 조치 방법을 기술품질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증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장의 지침에 따른다.

13.3 공인검사기관 감사

13.3.1 공인검사기관의 공인검사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규제기관이나 공인검사 대상조직으로부터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 기술품질전문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공인검사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13.3.2 공인검사기관 감사 시행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 지침서에 따른다.

13.4 다른 지침서의 준용

13.4.1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서의 발행과 관리에 관련하여 이 지침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서 KEPIC-11-11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인증” 제16장 각 절의 지침을 준용한다.

13.4.2 상기 13.4.1의 준용에 있어 “인증서 보유업체”는 “공인검사기관”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14장 자격인증의 변경 · 보류 · 취소 및 재심사

- 14.1 인증서의 유효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공백없이 갱신되어야 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에 대한 지침은 KEPIC-11-11의 17.1을 준용한다.
- 14.2 자격인증 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EPIC-11-11의 17.3.1 내지 17.3.3의 지침을 준용한다.
- 14.3 공인검사기관의 사무소 이전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심사와 위원회 심의없이 전담기구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다시 발행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KEPIC-11-11의 17.4.3의 지침에 따른다.
- 14.4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의 보류 · 취소 및 재심사에 관한 지침은 KEPIC-11-11의 17.7.1 및 17.7.3을 준용한다.

제15장 기타사항

- 15.1 공인검사기관 자격심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조정·심의에 관한 지침은 KEPIC-11-11의 제18장에 따른다.
- 15.2 공인검사기관 자격심사 관련 정보자료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침은 KEPIC-11-11의 제19장에 따른다.
- 15.3 공인검사기관 자격의 심사·심의·인증과정에서 입수하였거나 생산된 문서와 자료는 해당 기록이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 전담기구에서 보존기록으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전담기구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6장 부 록

16.1 [별표1] 공인검사기관 자격심사 점검표

16.2 [별표2] 양식 일람